**2022년 3월 10일자 통합이사회의 결의 - RDC 제630호**

**(2022년 3월 16일 연방관보 제51호에 고시)**

개인위생제품, 화장품 및 향수의 미생물 제어를 위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GMC MERCOSUL 결의 제51/1998호를 국내에 적용함.

**국가보건규제청의 통합이사회는** 1999년 1월 26일자 법률 제9,782호의 제7조, III과 IV 및 15조, III과 IV에 의거하며, 2021년 12월 10일 통합이사회 결의 RDC 제585호에 의해 승인된 내부 규정 제187조, VI, §1에 따라, 2022년 2월 9일자 회의에서 다음 결의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. 이에, 이사회 의장인 본인은 그 관보 고시를 승인한다.

제1조. 본 결의에서는 다음 분류에 따라 개인위생제품, 화장품 및 향수의 미생물 제어 매개변수를 설정한다:

I - 유형I:

a) 어린이용 제품

b) 눈 사용 제품

c) 점막과 접촉하는 제품

II - 유형II:

a) 미생물 오염에 민감한 기타 화장품

제2조. "유형 I"로 분류되는 개인위생제품, 화장품 및 향수의 미생물 제어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:

I - 총 호기성 중온성 미생물 수: 102 CFU/g 또는 ml 이하, 최대 한계는 5 x 102 CFU/g 또는 ml

II - 1g 또는 1ml내에 녹농균이 없음

III - 1g 또는 1ml내에 황색 포도상구균이 없음

IV - 1g 또는 1ml내에 총 및 대변 대장균군이 없음

V - 1g내에 아황산염 환원 클로스트리디아가 없음(탈크 전용).

제3조. "유형 II"로 분류되는 개인위생제품, 화장품 및 향수의 미생물 제어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:

I - 총 호기성 중온성 미생물 수: 103 CFU/g 또는 ml 이하, 최대 한계는 5 x 103 CFU/g 또는 ml;

II - 1g 또는 1ml내에 녹농균이 없음

III - 1g 또는 1ml내에 황색 포도상구균이 없음

IV - 1g 또는 1ml내에 총 및 대변 대장균군이 없음

V - 1g내에 아황산염 환원 클로스트리디아가 없음(탈크 전용)

제4조. 본 결의는 GMC MERCOSUR 결의 제51/1998호를 국가 법률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함이다.

제5조. 본 결의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1977년 8월 20일자 법률 제6,437호에 따라 위생 위반 처벌을 받게 되며, 아울러 해당 민사, 행정 및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.

제6조. 1999년 9월 27일자 연방관보 제185-E호 섹션1, 29페이지에 고시된 1999년 9월 23일자 결의 RES 제481호는 폐지한다.

제7조. 본 결의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안토니우 바라 토레스**